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

2017. 9. 22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유 준 상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9월 12일(화)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7년 9월 13일(수)

4. 관계법규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

5.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,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6. 주요내용

- 제15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정비

-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휘장변경 및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 삭제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7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,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- 검토의견으로는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」 제정에 따른 변경된 마포구 휘장을 표창장·상장·감사장 등 서식에 반영하고,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항별 순서 및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